

## II. OECD概要 및 保險分野 關聯內容

### 1. OECD概要 및 保險委員會

#### 가. OECD의 概要

##### 1) OECD 設立背景 및 會員國 現況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는 회원국간 經濟協力 및 政策調整을 위한 대표적인 협력기구의 하나로서 美·蘇 冷戰體制下에서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市場原理를 중시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수호하기 위하여 1961년 9월에 창설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중심의 대결구도하에서 미국은 동유럽 공산주의의 서유럽 확산을 막기 위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경제를 복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지원계획인 유럽경제부흥계획(일명 마샬플랜)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을 집행하고 서유럽 제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1948년 OECD의 모체가 되는 歐洲經濟協力機構(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가 설립되었다. 그 후, 유럽은 단기간내 급속한 경제부흥을 이룩한 반면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가 급증하는 등 미국과 유럽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여건이 변화하게 되자 OEEC도 성격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한편, 서유럽내에 지역경제공동체들이 난립하게 됨에 따라 이들 그룹을 포괄하고 북미와 아시아의 선진공업국들의 가입도 허용하는 보다 광역적이고 새로운 성격의 경제협력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OEEC를 擴大·改編하여 OECD를 창설하게 된 것이다.

창설 당시 OECD 회원국은 OECD의 전신인 歐洲經濟協力機構(OEEC)의 18개 會員國들과 美國 및 캐나다 등 20개국이었다. 그 후 1964년 4월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日本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69년 6월에는 濠洲가, 1973년 5월에는 뉴질

랜드가 가입함으로써 24개 회원국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뒤이어 20여년만인 1994년에는 멕시코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95년에는 東歐圈의 체코가 1996년에는 헝가리와 폴란드가 정식가입하여 現在 OECD 總會員國은 28個國이다.

<表 1> OECD 會員國 現況

구 분		회 원 국
북 미		미국, 캐나다
유 럽	EC 12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EFTA <sup>1)</sup> 6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랜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기 타	터키, 체코, 헝가리, 폴란드 <sup>2)</sup>
오 세 아 니 아		호주, 뉴질랜드
아 시 아		일본
남 미		멕시코

註: 1)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2) 체코, 헝가리, 폴란드는 1991년 1월부터 동유럽국가 지원프로그램(Partners in Transition Program)에 의해 읍저버로 참여하여 음.

## 2) OECD의 目的과 性格

OECD 설립의 주된 목적은 各 會員國의 經濟成長을 서로 도와 世界經濟發展에 貢獻하고 開發途上國에 필요한 援助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汎世界的 自由貿易의 擴大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OECD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와는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라 會員國間의 相互 關心分野에 대한 政策을 討議하고 協助·調整하기 위한 클럽(club)형태의 기구이다.

또한 OECD는 개발원조, 금융, 무역, 직접투자는 물론 경쟁, 에너지, 고용, 교육, 소

비자보호 등 모든 경제·사회·복지문제를 포괄하는 綜合的인 經濟協議機構로서 각국 경제정책 상호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조정하는 국제기구이기도 한데, 이러한 각국 경제정책들의 조정을 위해 회원국 정부간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포럼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OECD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政府代表들이 회합하여 각국 경제정책을 비교·검토하고 상호의견의 교환 및 조정을 거친 후 「一般的 合意」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이때, 도출된 OECD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會員國 全體의 合意를 原則으로 하므로 특정 회원국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특수사정에 따른 규정적용의 例外的인 留保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유보를 하지 않은 合意事項에 대해서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實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국들은 상호간에 暗默的인 壓力(peer pressure)을 통하여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게 된다.

### 3) OECD의 主要活動

OECD의 활동영역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經濟問題뿐 아니라 環境·教育·勞動 등 會員國 國民의 삶의 質에 관련된 분야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현재 OECD의 主要活動들을 살펴보면,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의 협의 및 조정, 구조 조정의 촉진, 자유무역의 확대·발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에너지정책 개발, 환경보호, 개발원조의 확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첨단기술개발 촉진, 소비자보호, 농업 및 어업분야 정책개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국제간 이중과세방지 및 조세도피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모색, 교육제도의 개혁, 여성지위향상,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정부조직의 효율화 방안 등 삶의 質 提高와 관련된 廣範圍한 分野의 政策을 開發하여 시행하고 있다.

OECD는 회원국들의 주요 經濟·社會問題에 대해서는 討議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UR·環境協商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에 관해서는 회원국간의 事前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하여 共同解決策 및 戰略을 모색한다. 또한, 주요 國際經濟問題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적용시킬 規範을 만들어 공표·시행하

는데, 이로써 OECD는 국제경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 4) OECD의 組織과 機能

OECD의 主要組織으로는 이사회, 각종 위원회, 사무국 및 관계기구 등이 있다.

理事會는 전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最高意思決定機構로서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로 구분된다. 閣僚理事會는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며, 연1회 개최되어 중요사항을 논의한다. 각 회원국의 OECD주재 대표자로 구성되는 常駐代表理事會는 주1회 정도 개최되어 정책문제토의, 예산승인 등 각종 현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이사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보조기구로서는 이사회 결정사항의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執行委員會와, 무역자유화와 통화제도개혁방안 등과 같은 사안을 검토하는 特別執行委員會 등이 있다.

각종 委員會는 분야별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그 분야의 實質的인 問題를 다루는 토의기구로서 26個의 分野別 專門委員會가 있으며, 保險委員會(Insurance Committee)도 이 중의 하나이다<sup>1)</sup>. 보험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에서 다루도록 한다.

事務局은 OECD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각 분야에서 명망 있는 교수·관료출신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理事會와 각종 委員會의 活動을 支援하고 있다. 사무국 요원들은 토의의 근거가 될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 대표들에게 배포하고 각종위원회의 회의에도 참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事務局長은 임기 5년으로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는데, 對外的으로 OECD를 代表하고 사무국을 지휘하며 OECD의 제반활동을 기획·관리하고 있다. 사무국장 밑에는 3명의 사무차장과 2,000명 가량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OECD내에는 각종 위원회에 비해 목적이나 활동 그리고 가입절차 등에서 신축성을 갖는 半獨立的 關係機構인 국제에너지기구, 개발센터, 핵에너지기구, 교육연구혁신센터 및 조선작업반 등이 있다. 國際에너지機構는 제1차 오일쇼크 이후 OECD내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세계 석유공급시장의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

1) 위원회의 종류 및 주요 활동내용은 p. 13의 <表 2> 참조.

1974년 설립한 기구로서 국제에너지계획의 실행을 통해 비상시 석유수급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석유시장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정보체계 구축, 대체에너지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開發센타는 경제개발 및 일반경제정책의 수립·집행에 관한 회원국의 지식과 경험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보급시킬 목적으로 1962년 설립되었다. 核에너지機構는 원자력기술개발 및 동 분야의 국제적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던 구미핵에너지기구를 1972년 확대·개편한 것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핵에너지의 생산·개발과 관련된 연구촉진, 정보교환 및 핵안전사고 방지장치를 강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敎育研究革新센타는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을 증진시키고 회원국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68년 설립되었으며, 造船作業班은 조선산업분야의 정상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조선국가간의 정책을 검토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나. 保險委員會

### 1) 保險委員會의 任務

2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保險委員會는 1961년 9월 30일 설치된 이래 회원국의 保險關聯 制度 및 監督規制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보험위원회의 주요 사명은 保險市場의 機能을 改善함으로써 保險産業의 發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經濟發展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상호간의 保險서비스 國際交易을 促進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회원국이 保險政策을 수립하도록 유도하여 國際的 協力을 強化하는 것이 동 위원회의 주요 임무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험위원회는 국내외적 보험이슈에 대한 討論의 場을 제공하고, 보험서비스의 국제교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국의 보험시장 선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감독과 규정에 대한 정책지향 연구를 수행하고 보험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委員會(CMIT) 등 다른 금융 및 금융거래 관련업무를 다루는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보험분야의 자유화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非會員國에게도 보험관련 규제 및 감독의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보험시장의 세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2) 保險委員會의 構成 및 傘下機構

보험위원회는 각 회원국 대표의 구성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政府, 監督機關, 業界를 망라하는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유럽보험위원회(European Insurance Committee), WTO 등 국제기구도 보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보험위원회는 산하에 OECD域外國을 포함하는 지역의 국제보험문제 등을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開途國保險에 관한 臨時그룹(Ad Hoc Group on Insurance in Developing Countries), 회원국의 보험활동에 관한 연도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위원회에 제출하는 統計作業班(Working Group on Insurance Statistics), 보험서비스에 관한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委員會와 保險委員會의 合同作業班(Joint Working Group on Insurance Services of the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 and the Insurance Committee) 및 보험회사의 支給能力과 관련한 政策專門家그룹(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Insurance Solvency) 등을 두고 있다.

## 3) 保險委員會의 主要 活動

보험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크게 다음의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 ① 保險市場의 自由化와 國際的 協力の 強化

보험위원회의 주요 활동영역 중 하나는 保險分野에 있어서 國際的 協力を 강화시

키는 것으로서 각 회원국 시장에서 다회원국 保險會社의 設立을 자유화하고 國境間 移動(cross-border)의 自由化擴大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의거래위원회(CMIT)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주로 資本移動 및 經常貿易外去來委員會와 保險委員會의 合同作業 班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경상무역의거래 자유화규약 중 보험분야 항목에 대한 회원국의 자유화 유보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자유화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상무역의거래 규약 보험항목의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위원회는 또한 保險서비스의 國際交易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 예를 들면 OECD 회원국들간의 상호승인원칙(mutual recognition principles) 개발 등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NAFTA협정, WTO협상 등 他國際機構의 보험관련 현안내용을 파악하여 이들 기구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사전협의 및 의견조율을 주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보험위원회는 각국의 國際交易에 관한 法規分析과 함께 보험서비스 교역에 障礙가 되는 요소들을 조사하고 있다.

## ② 保險會社의 財務的 支給能力

保險産業은 산업특성상 전통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하에서 강력한 보호 및 통제를 받아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모든 국가에서 점차 規制가 緩和되고 국제간 교류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環境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보다 개선된 보험회사의 危險管理技法과 철저한 當局의 監督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수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재무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보다 효과적인 보험감독체계 및 위험관리기법의 고안·실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보험위원회는 1993년 保險 監督政策과 技術的 支給能力(technical solvency)을 다루는 政府 專門家들로 구성된 專門그룹을 창설하였다. 이 그룹은 보험과 재보험의 감독기법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OECD회원국들의 지급능

력에 관한 규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 분야의 최근 주요 정책이슈들에 대하여 토론을 개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 재보험활동 규제, 청산규정(winding-up rules), 보험계리인, 시장세분화 이슈, 균등책임준비금, 조기경보시스템, 재보험 보유 및 캡티브설립 등의 주제에 대하여 토론·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예로 보험위원회는 再保險 분야의 情報公示와 관련된 OECD 권고서 작성작업도 하고 있고, 1995년 11월에는 『OECD회원국들의 보험지급능력 감독(insurance solvency supervision in the OECD countries)』이라는 보고서도 발간한 바 있다.

### ③ 政策分析

보험위원회는 그 주요 활동 중 하나로서 회원국의 보험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分析的 基礎研究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험서비스와 다른 금융서비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규제체계와 보험사 전략에 관한 연구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新보험상품의 감독규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政策樹立을 위한 分析的 基礎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의 生命保險商品 稅制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회원국들의 보험상품 관련 세제체계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험회사 破産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수많은 국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파산이나 재무적 위기상황 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보험회사의 投資政策에 관한 規程을 연구하여 투자감독시스템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투자규제와 관련한 분석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험위원회는 個人年金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는 국민연금체계에 있어서의 民營保險會社의 역할과 연금기금 및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규제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 ④ 保險市場과 監督規制의 모니터링

보험위원회의 또 다른 주요 기능 중 하나는 각 회원국 보험산업에 관한 情報의 交換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보험위원회는 각국 보험당국자들간의 몇 안되는 의사소통채널 중 하나이며 정부측과 민간측의 대표자가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위해 보험위원회는 각 회원국들 및 유럽공동체 등 주요 保險市場을 모니터링하고 국부적 이슈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핵보험,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공해보험, 노령퇴직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국의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역할 및 보험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토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몇몇 회원국들의 保險市場 規制體系와 經濟構造에 대하여 심도깊은 분석을 행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몇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金融改革에 따라 보험관련 감독규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보험위원회는 금융시장위원회(CFM), 자본이동 및 경상무역외거래 위원회(CMIT), 고용·노동·사회문제 위원회(ELSAC), 농업위원회(CA), 환경위원회(EPC), 철강위원회(SC), 핵에너지 분야의 제3자보상책임에 대한 정부전문가 그룹 등의 OECD內 다른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관심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국제기구와도 共同으로 研究를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하여 OECD 보험위원회가 보험분야에서의 全世界的 協力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非會員國들도 OECD의 研究와 經驗을 共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情報의 蒐集과 交換

보험위원회는 산하의 保險統計作業班을 통하여 모든 OECD 회원국들의 保險統計資料를 수집하여 통계연감을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국간

제도가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통계처리의 비정합성을 제거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의 保險關聯 法規 및 規程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여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1983년부터 1994년까지의 OECD회원국 보험통계에 관한 연차 보고서 및 "Paratte Report"로 알려진 개인연금의 감독체계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등이 발간되었다.

#### ⑥ 東유럽國家들의 保險産業 定着 支援

보험위원회는 동유럽국가경제협력센터(Centre for Co-operation with the Economies in Transition)의 지원하에 동유럽國家들에게 技術的 支援을 해주고 있는데, 보험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 감독체계수립 및 규정입안시 기술적 지원, 현행 법규 및 특정 이슈에 대한 분석, OECD회원국들의 법규체계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이들 국가가 조속히 자본주의적 보험산업을 정착시키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위원회는 1992년 파리에서 9개 동유럽국가들과 주요 보험정책이슈를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994년에는 보험위원회와 헝가리 보험감독국의 주최로 부다페스트에서 東西協議會(East-West Conference)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1997년에는 폴란드에서 제2차 동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위원회는 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 非會員國들의 會員國 資格審査 過程에도 참여한다.

<表 2> OECD의 分野別 專門委員會 및 主要活動

위 원 회 명 칭	주 요 활 동 내 용
경제정책위원회(EPC)	회원국의 경제정책을 검토·토의·조정
경제동향검토위원회(EDRC)	개별 회원국의 경제현황과 정책을 정기적(매년 1~2회)으로 검토하고 권고
통화·외환문제위원회(CMFEM)	회원국의 통화·외환정책을 검토
환경위원회(EPC)	회원국간에 적용시킬 국제적 환경기준과 규범의 토의 및 채택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발도상국 원조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문제 토의
공공관리위원회(PMC)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직 및 기능문제 검토, 행정규제완화, 시장기능활성화 등의 문제를 검토
무역위원회(TC)	자유무역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문제를 토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국제 투자와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관련된 규범을 검토
자본이동 및 무역외거래위원회(CMIT)	국제간 자본 및 서비스거래의 자유화 문제를 토의하며 주로 회원국의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이행상황을 검토
지불위원회(PC)	무역외거래, 자본거래 및 장기금융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OECD활동에 대해서 이사회에 조언하고 CMIT에 의해 검토된 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검토
금융시장위원회(CFM)	회원국의 금융정책을 평가하고 국제간 자본이동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개발
보험위원회(IC)	회원국의 보험정책의 연구·평가 및 보험관련 서비스의 자유화 문제를 검토
재정위원회(CFA)	주로 이중과세방지 및 국제간 조세관계의 통일에 관한 연구·토의
경쟁정책위원회(CCLP)	세계무역을 확대시키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 및 각국의 관련정책 검토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 및 각국의 관련정책 검토
관광위원회(TC)	국제간 관광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평가 및 정책수단 토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협력 및 정보교환문제 토의,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CICCP)	정보·컴퓨터·통신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회원국간 협조문제를 토의
공업위원회(IC)	회원국간의 공업문제의 토의와 동 분야의 협력증진방안 연구
해운위원회(MTC)	회원국간의 해운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개발 및 회원국의 해운정책 검토
철강위원회(SC)	철강산업의 합리적 구조개선과 비정상 남용조치 방지를 위한 회원국간 협조, 철강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규범의 창설 등의 기능수행
고용, 노동, 사회문제위원회(ELSAC)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인력정책,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정책개발 등의 기능수행
교육위원회(EC)	교육정책의 검토와 권고기능 수행
농업위원회(CA)	농업분야에서의 회원국의 정책검토와 농산물 교역자유화 문제 등을 토의
수산위원회(FC)	수산자원의 개발, 회원국의 수산정책평가, 수산물의 국제교역문제 등을 검토·토의
에너지정책위원회(EPC)	회원국간의 에너지문제에서의 정책협조를 증진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수급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발·토의

資料: 재무부 국제금융국, 『OECD관련 자료집』, 1994. 5. 31.

## 2. OECD 自由化規約 및 保險分野 關聯項目

### 가. OECD 自由化規約

OECD의 가입신청국은 먼저 회원국으로서의 一般的인 資格條件<sup>2)</sup>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일반적인 회원국의 자격을 갖춘 국가는 다음으로 OECD의 具體的 加入條件<sup>3)</sup>을 만족시켜야 가입이 이루어진다.

OECD 自由化規約은 이 중 구체적 가입조건인 自由化義務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규약으로서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을 지칭한다. 이 양대 자유화규약에는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自由化 義務事項이 분야별로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는데, 주로 자본의 국경간 이동과 외국자본의 신규투자, 외국기업의 설립,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등에 대한 자유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약에 적시된 자유화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회원국의 경제발전 정도, 자유화 수용능력 여부 및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自由化留保(reservation)나 適用免除(derogation)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할 때 어떤 조항에 대하여 自由化留保나 適用免除를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유화가 된다는 것은 自國의 거주자(국민 및 기업)와 OECD 회원국의 거주자를 동일하게 대우[內國民待遇]하고, 모든 회원국에 동등하게 적용[無差別待遇]한다는 것을 뜻한다.

---

2)일반적인 자격조건이란 타회원국과의 최소한의 동질성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多元的 民主主義國家(pluralistic democracy)로서 市場經濟體制(market economy)를 유지하고 人權을 尊重하는(respect for human right) 문명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3)구체적 가입조건은 일반적 의무, 권고적 의무 및 자유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一般的 義務는 OECD 설립목적의 지지, 제규정의 원칙적 수락 및 예산의 분담의무이며, 勸告的 義務는 GATT 11조 및 IMF 8조국으로의 이행과 저개발국가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개발원조제공 의무이다. 마지막 조건인 自由化 義務는 국가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과 資本移動 自由化規約을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경우 일단 자유화된 항목에 대해서는 再留保가 불가능하며(list A),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경우에는 재유보가 불가능한 list A항목과 재유보가 가능한 list B항목으로 구분되는데, 보험부문의 자본이동 자유화항목은 list A에 해당한다.

양대 자유화규약 중 保險과 直接關聯이 있는 項目은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2개 항목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의 6개 항목이다.

## 나. 保險分野 關聯項目

### 1) 資本移動 自由化規約

資本移動 自由化規約은 前文과 4부 23조로 구성된 本文 및 5개의 附屬書로 구성되어 있다.

資本移動自由化 項目은 부속서 A(Annex A)에 명시되어 있으며 총 16개의 대항목과 91개의 소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主要內容으로서 직접투자, 직접투자의 청산, 부동산거래, 자본시장에서의 증권거래, 단기금융시장에서의 거래, 기타 양도증서와 비증권권리의 거래, 공동투자증권의 거래, 국제상거래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신용, 금융상의 신용 및 대부, 담보·보증 및 보충금융, 예금계정거래, 외국환거래, 생명보험, 개인적 자본이동, 자본자산의 실물이동 및 비거주자 소유부채자금의 처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附錄 1> 참조).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중 保險關聯 部門인 XIII 대항목에는 生命保險 契約과 관련한 資本移動 및 確定年金의 送金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보험의 계약, 보험료, 연금, 보험금 등의 거래는 경상무역외거래로 취급되므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에서 다루어지지만, 생명보험 계약관련 자본이나 확정연금의 이전거래는 자본이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취급되어 자본이동 자유화규약내에서 다루어진다.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XIII항목은 2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항에는 非居住 保險業者가 居住者인 保險受益者에게 지불하는 資本 및 確定年金의 送金自由化

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B항에는 居住者인 保險業者가 非居住 保險受益者에게 지불하는 자본 및 확정연금의 송금자유화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한편, 이들 자유화항목은 리스트 A로서 일단 자유화된 이후에는 再留保가 不可能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사항으로 이미 자유화된 상태이다.

## 2)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

經常貿易外去來 自由化規約은 前文과 4부 24조로 된 本文 및 4개의 附屬書로 구성 되어 있다.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 항목은 부속서 A(Annex A)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의 유보내용은 부속서 B에 열거되어 있다. 부속서 A의 자유화항목은 알파벳 순서에 의한 11개의 대항목과 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主要內容은 각종 영업활동, 무역에 부수되는 활동, 운송, 보험, 은행 및 금융서비스, 자본소득, 여행 및 관광, 영화 등 시청각 관련 서비스, 개인소득 및 지출, 공공의 수입·지출 및 기타 일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附錄 2> 참조).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 중 保險部門은 11개 대항목 중 네번째인 D항목으로, 各種保險의 契約 및 締結의 自由化, 保險料 및 保險金의 送金自由化, 外國 保險業者의 支社 및 代理店 設置·運營에 관한 自由化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부문인 D항목은 다시 6개의 소항목(D/1~D/6)으로 분류되며, 각 소항목은 부속서 A의 부속서 I(Annex I to Annex A)에 보다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4부(Part I ~PartIV)에 걸쳐 총 32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제1부에는 무역관련보험(D/2), 생명보험(D/3), 및 기타보험(D/4)의 국경간 계약체결 및 보험료, 보험금 등의 이전거래에 관한 내용이, 제2부에는 재보험 및 재재보험의 국경간 계약 및 송금(D/5)에 관한 내용, 제3부에는 외국보험사 지점 및 대리점의 설립 및 운영(D/6)에 관한 항목, 제4부에는 외국보험사 지점 및 대리점과 본사와의 송금 등에 관한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外國 保險事業者의 商業的 駐在 및 營業條件에 대한 문제와 保險서비스의 國境間 去來, 거래에 따른 送金의 自由化 및 同等한 稅制惠澤 등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에는 부속서 중 보험에 관련된 두가지의 理事會 勸告書(No. 32와 No. 76)가 있다. 첫번째 이사회권고서(No. 32)는 保險監督當局間의 制度的인 協助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의 보험감독에 관련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각 국가내의 예외적인 감독조항들은 점차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조항으로 수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간 감독방식의 상이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국간의 보험거래에 있어서의 제약요인들을 제거하고 효과적인 감독기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번째 이사회권고서(No. 76)는 保險種目의 一般的인 分類에 관한 사항으로 각국의 보험종목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 따라 외국 사에 보험종목별로 영업면허를 발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